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회)	

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방재관리대책대행자 업무의 대행 범위에 침수흔적도 작성이 신설되어 구체적인 자격조건을 규정하고, 과태료 가중처분의 적용차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「자연재해대책법」이 개정(법률 제19331호, '23.4.11. 공포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, 운영상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업무를 등록할 수 있는 범위에 '침수흔적도 작성' 신설(안 제32조의2)

- 1) 법 제38조 제2항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의 등록 요건에 침수흔적도 작성을 추가하여 업무 위탁 등의 법적근거 마련

나.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에 필요한 자격조건 신설(안 제32조의2, 별표3)

- 1)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에 필요한 기술인력과 전공분야의 세부규정 마련

다.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(안 별표4)

- 1) 과태료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1년 이전에 부과한 처분은 반영

하지 않도록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의2제1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3. 침수흔적도 작성

별표 3 제2호마목에 9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)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

인원	기술인력	전공 분야
3명 이상	가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(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, 도로 및 공항기술사, 상하수도기술사, 농어업토목기술사, 수자원개발기술사, 토질 및 기초기술사,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술사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또는 지적기술사 (2) 라목2)나)부터 마)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토목시공학, 도로 및 교통공학, 상·하수도공학, 농업토목공학, 수자원공학, 토질 및 기초공학,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공학, 지적학
	나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토목기사, 방제기사 또는 1)나)(1)부터 (4)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	토목공학
	다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, 지적기사 또는 1)나)(1)부터 (4)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	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공학, 지적학

별표 4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처분차수는 가중처분의 적용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2조의2(대행자의 등록요건 등)	제32조의2(대행자의 등록요건 등)
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 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 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술 인력의 확보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및 제2항의 업무 전 부 또는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등록할 수 있다. 다만, 제6 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는 지진 부문과 풍수해 부문으로 세분하여 등록해야 한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의2. (생략)	1. ~ 4의2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4의3. 침수흔적도 작성</u>
5.·6. (생략)	5.·6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5 - 5118